

[2004년 7월 22일 현재]

해외 부패 관행법의 뇌물 방지 및 장부 기록 관련 조항
공법 제 105조 ~ 제 366조 (1998년 11월 10일)에서부터 현행법까지

미국법

제 15 편. 통상 및 무역

제 2B 장—증권 거래

제 78m 조. 정기 발행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a) 증권 발행자의 보고서; 내용

본 편 의 제 78i 조에 의거 등록된 증권 의 각 발행자 는 증권거래위원회 가 투자자들의 적정한 보호와 증권 의 공정한 거래 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 에 보고 해야 한다—

(1) 이러한 정보와 문서들은 (해당 복사본도 포함), 증권거래위원회 관련 정보와 문서들을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사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정보와 문서들을 신청서나 본 편 의 제 78i 조에 따라 등록 보고서의 일부로 혹은 등록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 위원회는 1962년 7월 1일 이전에 실행이 완료된 관련 계약서의 보고에 대하여는 예외를 적용한다.

(2) 이러한 연례 보고서는 (해당 복사본도 포함) 동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독립된 공인 회계사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동 위원회가 규정하는 경우 해당 분기 보고서도 (해당 복사본도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증권 거래소에 등록된 증권 의 각 발행자 는 해당 정보, 문서들, 보고서들을 동 거래소에 동일한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b) 보고서의 형태; 장부, 기록 및 내부 회계; 지침

(2) 본 편 의 제 78i 조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어 등록된 각 발행자 및 본 편 의 제 78o (d) 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각 발행자 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 장부, 기록 및 회계 내용과 발행자의 자산에 관한 거래 및 처리 내용을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세히 정확 공정하게 기록 및 보관해야 하며;

(B) 다음 사항들에 관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내부 회계 관리 체계를 수립 및 관리해야 한다—

(i) 거래는 경영진의 일반적 혹은 특정한 인가에 의해 실행됨;

(ii) 거래에 관해 다음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록함. (I) 동 기록에 적용되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리 혹은 기타 기준에 합당한 재무 제표의 작성이 가능, 그리고 (II) 자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

(iii) 자산에 대한 접근이 경영진의 일반적 혹은 특정한 인가에 의해서만 허락됨; 그리고

(iv) 자산 거래 설명에 관한 기록이 실행 가능한 간격으로 현존 자산과 비교 가능하고 제반 차이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

(3) (A) 미국의 국가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이러한 국가 안보의 책임을 맡은 여하한 연방 행정부서나 대행사의 책임자와 협력자가, 여하한 연방 행정부서나 대행사의 책임자와 협력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 행위가 대통령 권한으로 내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연방 행정부서나 대행사의 책임자가 서면으로 된 특정 지시서에 따라 한 경우에는 이 행위를 한 자에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본 하부 조 제(2)항에 있는 여하한 의무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본 항에 의해 발표된 각 지시 사항은 본 항의 조항들의 시행과 관련된 특정 사실들과 환경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각 지시 사항은, 서면으로 갱신이 되지 않는 한, 발표일로부터 1년 후 만기가 된다.

(B) 본 항에 의한 지시 사항을 발표하는 여하한 연방 행정부서 및 대행사의 각 책임자는 이러한 모든 지시 사항들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보존하고 매년 10월 1일에 전년도 기간 중에 시행했던 이러한 지시 사항들에 대한 요약을 하원 정보 영구 선별 위원회와 상원 정보 선별 위원회로 전송하여야 한다.

(4) 본 하부 조 제(5)항에 설명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하부 조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5) 어느 누구도 내부 회계 관리 체계를 고의로 속이거나, 고의로 불이행을 하거나, 고의로 제(2)항에 서술되어 있는 여하한 장부, 기록, 또는 계정을 허위 작성해서는 안 된다.

(6) 본 편 제 781조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어 등록된 발행자 또는 본 편 제 78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발행자가 국내외 회사에 관하여 50 퍼센트 이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 2 항은 발행자가 발행자의 상황에 따라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발행자가 성실하게 스스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러한 국내외 회사가 제(2)항에 부합하는 내부 회계 관리를 고안하고 보유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는 국내외 회사에 대한 발행자의 상대적인 소유권의 정도와 그러한 회사가 위치해 있는 국가의 법과 사업 운영 관행을 포함한다. 성실하게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행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추정한다.

(7) 본 하부 조 제(2)항에 기술된 용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보증” 및 “실행 가능한 범위 안의 세부사항”의 뜻은 관련 보증 수준과 정도가 신중한 관리들이 그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음을 뜻한다.

제 78dd-1 조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제 30A 조].

발행자에 의한 금지된 외국 무역 관행

(a) 금지

본 편의 제 781 조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어 등록된 발행자 또는 본 편의 제 780 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 또는 이러한 발행자를 대신하여 경영 간부, 이사, 직원, 또는 이러한 발행자나 해당 주주의 대리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제안, 지불, 지불에 관한 약속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전 지불 또는 제안, 선물, 선물 약속, 또는 여하한 가치가 있는 물품을 주기로 보증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우편이나 기타 수단, 또는 국가간 통상 중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1) 여하한 외국 공직자에게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A) (i) 외국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ii) 이러한 외국 공직자가 자신의 합법적 직무를 위반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iii) 여하한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는

(B) 이러한 외국 공직자가 이러한 발행자가 거래를 획득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여하한 자에게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정부나 해당 대행사의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

(2) 여하한 외국 정당, 해당 관리 또는 외국 정당의 후보자에게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A) (i) 이러한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ii) 이러한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소속 정당, 관리, 후보자 자신의 합법적 직무를 위반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iii) 여하한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는

(B) 이러한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이러한 발행자가 거래를 획득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여하한 자에게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정부나 대행사의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3) 여하한 자가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으로 여하한 외국 공직자, 여하한 외국 정당 또는 해당 관리, 또는 외국 정당의 여하한 후보자에게 제안을 하거나, 주거나,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 (i) 이러한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소속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ii) 이러한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소속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후보자 자신의 합법적 직무를 위반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iii) 여하한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는

(B) 이러한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자신 또는 그 것의 영향력을 외국 정부나 정부의 대행 기관을 이용하여 외국 정부 또는 행정부서의 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는 발행자가 사업을 획득하고 유지하거나 또는 이를 함께하며 사업을 여하한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기 위함이다.

(b)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예외

본 조의 하부 조 (a)와 (g)는 외국 공직자, 정당 또는 정당 관리가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수행을 진척시키거나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공직자, 정당 또는 정당 관리에게 촉진시키거나 진척시키기 위한 지불을 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c) 긍정적인 방어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본 조의 하부 조 (a) 와 (g)의 행위가 긍정적인 방어가 된다—

(1) 지급한 금액, 선물, 제안 또는 가치가 있는 여하한 물품이 해당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의 자국의 성문화 된 법과 규정에서 합법적인 것; 또는

(2) 지급한 금액, 선물, 제안 또는 가치가 있는 여하한 물품이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에 의해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다음 사항과 직접 관련되어 출장 및 숙소 비용과 같은 합당하면서 실제 비용으로 지출된 것—

(A)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촉진, 공개 선전 또는 설명; 또는

(B) 외국 정부나 대행사와의 계약 실행 또는 이행.

(d) 법무 장관의 지침서

1988년 8월 23일로부터 일 년 안에, 법무 장관은 증권거래위원회, 상무 장관, 미국 무역 대표단, 국무 장관 및 재무 장관과의 협의 후, 그리고 공공 통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본 조의 준수와 관련하여 보장할 범위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 공동체가 본 조의 전기 조항에 관해 보다 더 명확한 내용을 알려 줄 것이라고 결정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 관해 다음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1) 수출 판매 주선과 사업 계약의 일반적인 유형과 관련하여 행위에 관한 특정 유형을 설명하는 지침들. 이 지침들은 법무부의 현존 실시 정책을 목적으로 법무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본 조의 전기 조항과 일치할 것임; 그리고

(2) 발행자들이 본 조의 전기 조항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현존 실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그들의 행위를 자발적인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방 절차.

법무장관은 제 5편 제 5장 하부 장 제 II장의 조항에 따라 전기 문장에 언급되어 있는 지침과 절차를 발행할 것이며 동 지침과 절차는 본 편 제 7장의 조항을 따를 것이다.

(e) 법무장관의 의견

(1) 법무장관은 미국의 관련 행정 부서와 대행사들과의 협의 후, 그리고 공공 통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본 조의 전기 조항과 관련하여 발행자들이 그들의 행위가 법무부의 현존 실시 정책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특정한 질문 사항에 대답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법무장관은 이러한 질문 사항을 접수한 후 30일 안에 동 질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법무장관의 의견은 어떤 특정한 미래의 행위가 법무부의 현존 실시 정책에 대하여 본 조의 전기 조항에 대한 위반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설명한다. 발행자들은 이전 요청 사항들에 관해 이미 설명한 행위 외의 기타 특정한 미래의 행위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는 추가 요청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 조의 적용 가능 조항에 해당되는 여하한 행위에 대해서, 발행자가 요청한 행위에 대해 법무장관이 그러한 행위가 법무부의 현존 시행 정책에 부합하다고 의견을 발표한 행위는 본 조의 전기 조항들을 준수한다는 추정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본 항의 목적을 위해 동 추정을 검토함에 있어서, 법원은 법무장관에게 제출한 그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법무장관이 접수 받은 제반 요청 사항에 명시된 행위의 범위 안에 있는지 등을 포함하는,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요인들을 검토한다. 법무장관은 제 5 편 제 5 장 하부 장 제 II 장의 조항에 따라 본 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동 절차는 본 편 제 7 장의 조항에 따른다.

(2) 발행자가 제(1)항에 수립된 절차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법무부나 기타 미국의 여하한 연방 행정부서나 대행사에 제공되거나 접수, 또는 이러한 부서나 기관에서 작성한 여하한 문서나 기타 자료는 동 발행자의 동의 없이는 법무장관이 그러한 요청에 대해 대답을 하든지, 또는 동 발행자가 대답을 받기 전에 그러한 요청을 철회하든지, 상관없이 제 5 편 제 552 조에 의거 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3) 제(1) 항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요청한 발행자는 법무장관이 동 요청에 대답하는 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그러한 요청을 철회해도 좋다. 이렇게 철회된 제반 요청은 효력이나 영향력이 없다.

(4) 법무장관은, 실행 가능한 최고의 범위 안에서, 본 조의 전기 조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특정한 조언을 구하지 못하는 잠재적 수출업자들과 소기업자들에게 동 조항과 관련된 법무부의 현존 실시 정책 사항에 관하여 적시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지침은 법무부의 현존 실시 정책에 대하여 본 조의 전기 조항들 및 본 조의 전기 조항에 있는 준수 책임과 잠재적 부담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관련하여 특정한 미래의 행위에 대한 준수 사항에 관한 제(1)항에 따라 요청 사항에 대답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f) 정의

본 조의 목적은:

(1) (A) “외국 공직자”라는 용어는 외국 정부, 행정부서, 대행사 또는 해당 중계업체 또는 공적 국제 기관의 여하한 관리나 직원, 또는 그러한 정부, 행정부서, 대행사 또는 중계업체를 위해서나 중계업자를 대신하여, 또는 여하한 그런 공적 국제 기관을 위해서나 대신하여 공직 임무를 수행하는 여하한 자를 뜻한다.

(B) 하부 항 (A) 를 목적으로 보면, “공적 국제 기관”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뜻한다—

- (i) 국제 기구 면제법 (미국법 제 22 편 § 제 288 조) 제 1 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 (ii) 본 조의 목적으로 보면, 행정명령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여하한 기타 국제 기구이며, 효력은 동 명령의 연방 공보 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2) (A) 어떤 자의 정신 상태는 다음의 경우에 행위, 상황 또는 결과와 관련하여 “안다”로 간주된다—

- (i) 그러한 자가 그러한 행위에 관여한다는 것, 그러한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 또는 그러한 결과가 실지로 확실히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 (ii) 그러한 자가 그러한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 또는 그러한 결과가 실지로 확실히 일어날 것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는 경우.

(B) 특정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는 사실은 위법 결정에 필수이며, 그러한 ‘안다’는 사실은, 만약 어떤 자가 그러한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제로 믿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자는 그러한 환경의 존재에 대한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3) (A) “일상적인 정부 행위”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외국 공직자에 의해 보통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만을 뜻한다—

(i) 외국에서 어떤 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허가, 면허 또는 기타 공문을 얻고자 함;

(ii) 비자나 작업 주문서와 같은 정부 서류를 처리;

(iii) 상품을 전국에 수송하기 위하여 계약 수행이나 점검과 관련된 경찰의 보호, 우편물 찾기 및 배달 또는 점검 일정을 제공;

(iv) 전화 서비스, 전기 및 수도 공급, 화물 적재 및 양륙 또는 품질 저하가 되는 부패성 생산품 또는 생필품의 보호; 또는

(v) 이상과 유사한 성질의 행위.

(B) “일상적인 정부 행위”라는 용어는 외국 공직자가 특정 당사자에게 신 사업을 줄 것인지 아닌지, 어떤 조건으로 줄 것인지, 또는 기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 어떤 조건으로 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여하한 결정도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특정 당사자에게 신 사업을 줄 것인지 또는 기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된 외국 공직자가 취하는 여하한 행위도 포함하지 않는다.

(g) 대체 관할권

(1) 미국 연방법, 주법, 준주법, 점유지법 또는 미국의 자치주법 또는 해당 정치 구역의 법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본 편의 제 12 조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어 등록되었거나 본 편의 제 15(d)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된 여하한 발행자 또는 그러한 발행자의 중역,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그러한 발행자를 대신하는 관련 주주인 여하한 미국인이 제안, 지불, 지불을 약속 또는 여하한 금전을 주기로 보증을 조장하기 위해, 또는 제안, 선물, 선물 약속 또는 여하한 가치가 있는 물품을 그러한 발행자나 그러한 중역, 이사, 직원 또는 주주가 본 조의 본 하부 조 (a)의 제(1), (2) 및 (3)항에 서술된 여하한 개인들이나 단체들에게 그러한 제안, 선물, 지불, 약속 또는 보증을 조장하기 위해, 우편이나 여하한 수단 또는 국가간 무역 중계 이용 유무에 상관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국 외에서 여하한 행위를 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2) 본 하부 조에 사용한 것처럼, “미국인”이라는 용어는 (이민 및 국적법(미국법 제 8편 § 제 1101 조)의 제 101 조에 정의된 것처럼) 미국 국민 또는 미국 연방법, 주법, 준주법, 점유지법 또는 미국의 자치주법 또는 해당 정치 구역의 법에 의해 조직된 여하한 법인, 동업자, 협회, 공동-주주 회사, 사업 신탁, 비법인 기관, 또는 단독 소유업체를 뜻한다.

제 78dd-2 조. 국내업체에 의해 금지된 외국 무역 관행

(a) 금지

본 편의 제 78dd-1 조에 의해 발행자가 아닌 여하한 국내업체, 여하한 중역, 이사, 직원 또는 그러한 국내업체의 대행사 또는 그러한 국내업체를 대신하는 여하한 주주가 제안, 지불, 지불 약속 또는

금전 지불에 대한 승인을 조장하기 위하여 또는 제안, 선물, 선물 약속, 또는 가치가 있는 여하한 것을 다음과 같은 자에게 주는데 대한 승인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우편이나 기타 수단 또는 국가간 통상 중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1) 여하한 외국 공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A) (i) 외국 공직자가 직무상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ii) 이러한 외국 공직자가 자신의 합법적 직무를 위반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iii) 여하한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는

(B) 이러한 외국 공직자가 거래를 획득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여하한 자에게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정부나 해당 대행사의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

(2) 여하한 외국 정당, 해당 관리 또는 외국 정당의 후보자에게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A) (i) 이러한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ii) 이러한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소속 정당, 관리, 후보자 자신의 합법적 직무를 위반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iii) 여하한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는

(B) 이러한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이러한 발행자가 거래를 획득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여하한 자에게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정부나 대행사의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3) 여하한 자가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돈이나 귀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으로 여하한 외국 공직자, 여하한 외국 정당 또는 해당 관리, 또는 외국 정당의 여하한 후보자에게 제안을 하거나, 주거나,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 (i) 이러한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소속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ii) 이러한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소속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후보자 자신의 합법적 직무를 위반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iii) 여하한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는

(B) 이러한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이러한 발행자가 거래를 획득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여하한 자에게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정부나 해당 대행사의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

(b)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예외

본 조의 하부 조 (a)와 (i)는 외국 공직자, 정당 또는 정당 관리가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수행을 진척시키거나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공직자, 정당 또는 정당 관리에게 촉진시키거나 진척시키기 위해 지불을 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c) 긍정적인 방어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본 조의 하부 조 (a)와 (i)의 행위가 긍정적인 방어가 된다—

(1) 지급한 금액, 선물, 제안 또는 가치가 있는 여하한 물품이 해당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의 자국의 성문화 된 법과 규정에서 합법적인 것; 또는

(2) 지급한 금액, 선물, 제안 또는 가치가 있는 여하한 물품이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에 의해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다음 사항과 직접 관련되어 출장 및 숙소 비용과 같은 합당하면서 실제 비용으로 지출된 것—

(A)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촉진, 공개 선전 또는 설명; 또는

(B) 외국 정부나 대행사와의 계약 실행 또는 이행.

(d) 구제 명령

(1) 법무 장관이 본 조에서 적용하는 여하한 국내업체, 또는 중역, 이사, 직원, 대리인 또는 관련 주주가 본 조의 하부 조 (a) 및 (i) 에 대한 위반을 초래하는 여하한 행위나 관행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그러한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법무 장관은 임의로, 해당 지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논증을 통해, 보석보증금 없이 영구 명령이나 임시 규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법무 장관이 본 조를 집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사료되는 여하한 민사 수사를 목적으로, 법무 장관이나 그의 피지명인은 선서 증언, 증인 소환, 증거물 채택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법무 장관이,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여하한 장부, 기록 또는 기타 문서 작성 또는 그러한 수사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3) 발부 받은 소환장에 불복종하거나 복종을 거절하는 자는 누구나, 법무 장관이 그러한 수사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사법 관할 내, 또는 그러한 자의 거주지나 사업 장소의 관할지 내에 증인의 출두와 증언, 장부, 기록 또는 기타 문서 요청과 관련하여 여하한 미국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하한 해당 법원은 그러한 자가 법무 장관이나 그의 피지명인 앞에 출두, 명령이 있을 시는 기록을 준비, 또는 수사 관련 문제에 관해 진술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한 법원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해당 법원에서 법정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한 제반 사건에 대한 모든 처리는 해당 자의 거주지나 해당 자가 발견된 사법 지법에서 시행될 수 있다. 법무 장관은 본 하부 조의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할 경우 민사 수사와 관련되는 규칙을 만들 수도 있다.

(e) 법무 장관의 지침서

1988년 8월 23일로부터 6개월 안에, 법무 장관은 증권거래위원회, 상무 장관, 미국 무역 대표단, 국무 장관 및 재무 장관과의 협의 후, 그리고 공공 통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본 조의 준수와 관련하여 보강할 범위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 공동체가 본 조의 전기 조항에 관해 보다 더 명확한 내용을 알려 줄 것이라고 결정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 관해 다음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1) 수출 판매 주선과 사업 계약의 일반적인 유형과 관련하여 행위에 관한 특정 유형을 설명하는 지침들. 이 지침들은 법무부의 현존 실시 정책을 목적으로 법무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본 조의 전기 조항과 일치할 것임; 그리고

(2) 발행자들이 본 조의 전기 조항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현존 실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그들의 행위를 자발적인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방 절차.

법무장관은 제 5편 제 5 장 하위 II 장의 조항에 따라 전기 문장에 언급되어 있는 지침과 절차를 발행할 것이며 동 지침과 절차는 본 편 제 7 장의 조항을 따를 것이다.

(f) 법무장관의 의견

(1) 법무장관은 미국의 관련 행정 부서와 대행사들과의 협의 후, 그리고 공공 통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본 조의 전기 조항과 관련하여 국내업체가 그들의 행위가 법무부의 현존 실시 정책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특정한 질문 사항에 대답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법무장관은 이러한 질문 사항을 접수한 후 30 일 안에 동 질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법무장관의 의견은 어떤 특정한 미래의 행위가 법무부의 현존 실시 정책에 대하여 본 조의 전기 조항에 대한 위반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설명한다. 발행자들은 이전 요청 사항들에 관해 이미 설명한 행위 외의 기타 특정한 미래의 행위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는 추가 요청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 조의 적용 가능 조항에 해당되는 여하한 행위에 대해서, 국내업체가 요청한 행위에 대해 법무장관이 그러한 행위가 법무부의 현존 시행 정책에 부합하다고 의견을 발표한 행위는 본 조의 전기 조항들을 준수한다는 추정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본 항의 목적을 위해 동 추정을 검토함에 있어서, 법원은 법무장관에게 제출한 그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법무장관이 접수 받은 제반 요청 사항에 명시된 행위의 범위 안에 있는지 등을 포함하는,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요인들을 검토한다. 법무장관은 제 5편 제 5 장 하부 장 제 II 장의 조항에 따라 본 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동 절차는 본 편 제 7 장의 조항에 따른다.

(2) 국내업체가 제(1)항에 수립된 절차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법무부나 기타 미국의 여하한 연방 행정부서나 대행사에 제공되거나 접수되거나 작성된 여하한 문서나 기타 자료가 동 국내업체의 동의 없이는 법무장관이 그러한 요청에 대해 대답을 하건, 또는 동 국내업체가 대답을 받기 전에 그러한 요청을 철회하건 상관없이 제 5편 제 552 조에 의거 공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3) 제(1)항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요청한 국내업체는 법무장관이 이 요청에 대답하는 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그러한 요청을 철회해도 좋다. 이렇게 철회된 제반 요청은 효력이나 영향이 없다.

(4) 법무장관은, 실행 가능한 최고의 범위 안에서, 본 조의 전기 조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특정한 조언을 구하지 못하는 잠재적 수출업자들과 소기업자들에게 동 조항과 관련된 법무부의 현존 실시 정책 사항에 관하여 적시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지침은 법무부의 현존 실시 정책에 대하여 본 조의 전기 조항들 및 본 조의 전기 조항에 있는 준수 책임과 잠재적 부담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관련하여 특정한 미래의 행위에 대한 준수 사항에 관한 제(1)항에 따라 요청 사항에 대답하는 것으로 국한될 것이다.

(g) 처벌

- (1) (A) 자연인이 아닌 여하한 국내업체가 본 조의 하부 조 (a) 또는 (i)를 위반할 시는 최고 2 백만 달러까지 벌금형을 부과한다.
- (B) 자연인이 아닌 여하한 국내업체가 본 조의 하부 조 (a) 또는 (i)를 위반할 시는 법무장관이 부과하는 최고 만 달러까지의 민사 처벌을 받는다.
- (2) (A) 국내업체의 중역, 이사, 직원 또는 국내업체를 대표하는 주주인 자연인이 본 조의 하부 조 (a) 또는 (i)를 의도적으로 위반할 시는 최고 십만 달러까지의 벌금형 또는 최고 5 년의 감금, 또는 둘 다 처벌을 받는다.
- (B) 국내업체의 중역, 이사, 직원 또는 국내업체를 대표하는 주주인 자연인이 본 조의 하부 조 (a) 또는 (i)를 위반할 시는 법무장관이 부과하는 최고 만 달러까지 민사 처벌을 받는다.
- (3) 제(2)항에 의해 국내업체의 중역, 이사, 직원 또는 국내업체의 주주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에는 언제나 그 국내업체가 그 벌금을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지불해서는 안 된다.

(h) 정의

본 조의 목적은:

(1) “국내업체”라는 용어는—

(A) 여하한 미국의 시민, 미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미국 거주자; 그리고

(B) 주 사업 장소가 미국에 있거나 미국의 주, 준주, 점유령 또는 미국의 자치주의 법에 의해 조직된 여하한 기업, 동업, 협회, 합자회사, 경영 신탁, 비법인 기관 또는 단독 소유업체를 뜻한다.

(2) (A) “외국 공직자”라는 용어는 외국 정부, 행정부서, 대행사 또는 해당 중계업체 또는 공적 국제 기관의 여하한 관리나 직원, 또는 그러한 정부, 행정부서, 대행사 또는 중계업체를 위하거나 대신하여, 또는 여하한 그런 공적 국제 기관을 위하거나 대신하여 공직 임무를 수행하는 여하한 자를 뜻한다.

(B) 하부 항 (A)를 목적으로 보면, “공적 국제 기관”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뜻한다—

(i) 국제 기구 면제법 (미국법 제 22 편 §제 288 조) 제 1 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ii) 본 조의 목적으로 행정명령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여하한 기타 국제 기구이며, 동 명령의 연방 공보 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A) 어떤 자의 정신 상태는 다음 경우에 행위, 상황 또는 결과와 관련하여 “안다”로 간주된다—

(i) 그러한 자가 그러한 행위에 관여한다는 것, 그러한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 또는 그러한 결과가 실지로 확실히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ii) 그러한 자가 그러한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 또는 그러한 결과가 실지로 확실히 일어날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경우.

(B) 특정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는 사실은 위법 결정에 필수이며, 그러한 ‘안다’는 사실은, 만약 어떤 자가 그러한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제로 믿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자는 그러한 환경의 존재에 대한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4) (A) “일상적인 정부 행위”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외국 공직자에 의해 보통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만을 뜻한다—

(i) 외국에서 어떤 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허가, 면허 또는 기타 공문을 얻고자 함;

(ii) 비자나 작업 주문서와 같은 정부 서류를 처리;

(iii) 상품의 국내 수송을 위하여 계약 수행이나 검사와 관련된 경찰 보호, 우편물 찾기 및 배달 또는 검사 일정을 제공;

(iv) 전화 서비스, 전기 및 수도 공급, 화물 적재 및 부하 또는 품질 저하가 되는 부패성 생산품 또는 생필품의 보호; 또는

(v) 이상과 유사한 성질의 행위.

(B) “일상적인 정부 행위”라는 용어는 외국 공직자가 특정 당사자에게 신 사업을 줄 것인지 아닌지, 어떤 조건으로 줄 것인지, 또는 기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 어떤 조건으로 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여하한 결정도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특정 당사자에게 신 사업을 줄 것인지 또는 기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된 외국 공직자가 취하는 여하한 행위도 포함하지 않는다.

(5) “국가간 통상”이라는 용어는 여러 주 사이에, 또는 여하한 외국과 여하한 주 사이 및 여하한 주 및 해외의 여하한 장소나 선박 사이에서 일어나는, 주 안에서 사용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 통상, 수송 또는 통신을 뜻한다—

(A) 전화 또는 기타 국가간 통신 수단, 또는

(B) 기타 국가간 중계.

(i) 대체 관할권

(1) 여하한 미국인이 제안, 지불, 지불을 약속 또는 여하한 금전을 주기로 보증을 조장하기 위해, 또는 제안, 선물, 선물 약속 또는 여하한 가치가 있는 물품을 그러한 발행자나 그러한 중역, 이사, 직원 또는 주주가 본 조의 본 하부 조 (a)의 제(1), (2) 및 (3)항에 서술된 여하한 개인들이나 단체들에게 그러한 제안, 선물, 지불, 약속 또는 보증을 조장하기 위해, 우편이나 여하한 수단 또는 국가간 무역 중계 이용 유무에 상관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국 외에서 여하한 행위를 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2) 본 하부 조에 사용한 것처럼, “미국인”이라는 용어는 (이민 및 국적법(미국법 제 8편 § 제 1101 조)의 제 101 조에 정의된 것처럼) 미국 국민 또는 미국 연방법, 주법, 준주법, 점유지법 또는 미국의 자치주법 또는 해당 정치 구역의 법에 의해 조직된 여하한 법인, 동업자, 협회, 공동-주주 회사, 사업 신탁, 비법인 기관, 또는 단독 소유업체를 뜻한다.

제 78dd-3 조. 발행자나 국내업체가 아닌 자에 대한 외국 무역 관행 관련 금지

(a) 금지

1934년 증권거래법의 제 30A 조에 따라 발행자가 아닌 여하한 자, 동 법의 제 104 조에 정의된 국내업체, 여하한 중역, 이사, 직원, 그러한 자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자를 대표하는 여하한 주주가 미국 영토에 있을 시, 제안, 지불, 지불 약속 또는 금전, 제안, 선물, 선물 약속 또는 가치가 있는 선물을 조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우편이나 기타 수단 또는 국가간 통상 중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1) 여하한 외국 공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A) (i) 외국 공직자가 공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ii) 이러한 외국 공직자가 자신의 합법적 직무를 위반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iii) 여하한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는

(B) 이러한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자신 또는 그것의 영향력을 외국 정부나 정부의 대행 기관을 이용하여 외국 정부나 행정부서의 결정 또는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는 발행자가 사업을 획득하고 유지하거나 또는 이를 함께하며 사업을 여하한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기 위함이다.

(2) 여하한 외국 정당, 해당 관리 또는 외국 정당의 후보자에게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A) (i) 이러한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공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ii) 이러한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소속 정당, 관리, 후보자 자신의 합법적 직무를 위반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iii) 여하한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는

(B) 이러한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이러한 발행자가 거래를 획득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여하한 자에게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정부나 대행사의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3) 여하한 자가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으로 여하한 외국 공직자, 여하한 외국 정당 또는 해당 관리, 또는 외국 정당의 여하한 후보자에게 제안을 하거나, 주거나,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 (i) 이러한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소속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ii) 이러한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소속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후보자 자신의 합법적 직무를 위반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또는 (iii) 여하한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는

(B) 이러한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가 거래를 획득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여하한 자에게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정부나 해당 대행사의 여하한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

(b)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예외

본 조의 하부 조 (a)는 외국 공직자, 정당 또는 정당 관리가 일상적인 정부 행위의 수행을 진척시키거나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공직자, 정당 또는 정당 관리에게 촉진시키거나 진척시키기 위한 지불을 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c) 긍정적인 방어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본 조의 하부 조 (a)의 행위가 긍정적인 방어가 된다—

(1) 지급한 금액, 선물, 제안 또는 가치가 있는 여하한 물품이 해당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의 자국의 성문화 된 법과 규정에서 합법적인 것; 또는

(2) 지급한 금액, 선물, 제안 또는 가치가 있는 여하한 물품이 외국 공직자, 정당, 정당 관리 또는 후보자에 의해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다음 사항과 직접 관련되어 출장 및 숙소 비용과 같은 합당하면서 실제 비용으로 지출된 것—

(A)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촉진, 공개 선전 또는 설명; 또는

(B) 외국 정부나 대행사와의 계약 실행 또는 이행.

(d) 구제 명령

(1) 법무 장관이 본 조에서 적용하는 여하한 국내업체, 또는 중역, 이사, 직원, 대리인 또는 관련 주주가 본 조의 하부 조 (a)에 대한 위반을 초래하는 여하한 행위나 관행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그러한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법무 장관은 임의로, 해당 지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논증을 통해, 보석보증금 없이 영구 명령이나 임시 규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법무 장관이 본 조를 집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사료되는 여하한 민사 수사를 목적으로, 법무 장관이나 그의 피지명인은 선서 증언, 증인 소환, 증거물 채택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법무 장관이,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여하한 장부, 기록 또는 기타 문서 작성 또는 그러한 수사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3) 발부 받은 소환장에 불복종하거나 복종을 거절하는 자는 누구나, 법무 장관이 그러한 수사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사법 관할 내, 또는 그러한 자의 거주지나 사업 장소의 관할지 내에 증인의 출두와 증언, 장부, 기록 또는 기타 문서 요청과 관련하여 여하한 미국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하한 해당 법원은 그러한 자가 법무 장관이나 그의 피지명인 앞에 출두, 명령이 있을 시는 기록을 준비, 또는 수사 관련 문제에 관해 진술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한 법원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해당 법원에서 법정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

(4) 그러한 제반 사건에 대한 모든 처리는 해당 자의 거주지나 해당 자가 발견된 사법 지법에서 시행될 수 있다. 법무 장관은 본 하부 조의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할 경우 민사 수사와 관련되는 규칙을 만들 수도 있다.

(e) 처벌

(1) (A) 여하한 사법인이 본 조의 하부 조 (a)를 위반할 시는 최고 2 백만 달러까지 벌금형을 부과한다.

(B) 여하한 사법인이 본 조의 하부 조 (a)를 위반할 시는 법무장관이 부과하는 최고 만 달러까지의 민사 처벌을 받는다.

(2) (A) 여하한 자연인이 본 조의 하부 조 (a)를 의도적으로 위반할 시는 최고 십만 달러까지의 벌금형 또는 최고 5 년의 감금, 또는 둘 다 처벌을 받는다.

(B) 여하한 자연인이 본 조의 하부 조 (a)를 위반할 시는 법무장관이 부과하는 최고 만 달러까지의 민사 처벌을 받는다.

(3) 제 (2) 항에 의해 중역, 이사, 직원 또는 한 개인의 주주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에는 언제나 동 개인이 벌금을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지불해서는 안 된다.

(f) 정의

본 조의 목적은:

(1) 범법자를 지칭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는 미국 국민 (미국법 제 8 편 § 제 1101 조에 정의가 된)이 아닌 여하한 자연인 또는 해당 정치 구역법에 의해 조직된 여하한 기업, 동업, 협회, 합자회사, 경영 신탁, 비법인 기관 또는 단독 소유업체를 뜻한다.

(2) (A) “외국 공직자”라는 용어는 외국 정부, 행정부서, 대행사 또는 해당 중계업체 또는 공적 국제 기관의 여하한 관리나 직원, 또는 그러한 정부, 행정부서, 대행사 또는 중계업체를 위하거나 대신하여, 또는 여하한 그런 공적 국제 기관을 위하거나 대신하여 공직 임무를 수행하는 여하한 자를 뜻한다.

하부 항 (A)를 목적으로 보면, “공적 국제 기관”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뜻한다—

(i) 국제 기구 면제법 (미국법 제 22 편 § 제 288 조) 제 1 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ii) 본 조의 목적으로 보면 행정명령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여하한 기타 국제 기구이며, 효력은 동 명령의 연방 공보 발행일로부터

(3) (A) 어떤 자의 정신 상태는 다음 경우에 행위, 상황 또는 결과와 관련하여 “안다”로 간주된다—

(i) 그러한 자가 그러한 행위에 관여한다는 것, 그러한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 또는 그러한 결과가 실지로 확실히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ii) 그러한 자가 그러한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 또는 그러한 결과가 실지로 확실히 일어날 것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는 경우.

(B) 특정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는 사실은 위법 결정에 필수이며, 그러한 ‘안다’는 사실은, 만약 어떤 자가 그러한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제로 믿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자는 그러한 환경의 존재에 대한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4) (A) “일상적인 정부 행위”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외국 공직자에 의해 보통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만을 뜻한다—

- (i) 외국에서 어떤 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허가, 면허 또는 기타 공문을 얻고자 함;
- (ii) 비자나 작업 주문서와 같은 정부 서류를 처리;
- (iii) 상품을 전국에 수송하기 위하여 계약 수행이나 검사와 관련된 경찰 보호, 우편물 찾기 및 배달 또는 검사 일정을 제공;
- (iv) 전화 서비스, 전기 및 수도 공급, 화물 적재 및 부하 또는 품질 저하가 되는 부패성 생산품 또는 생필품의 보호; 또는
- (v) 이상과 유사한 성질의 행위.

(B) “일상적인 정부 행위”라는 용어는 외국 공직자가 특정 당사자에게 신 사업을 줄 것인지 아닌지, 어떤 조건으로 줄 것인지, 또는 기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 어떤 조건으로 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여하한 결정도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특정 당사자에게 신 사업을 줄 것인지 또는 기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된 외국 공직자가 취하는 여하한 행위도 포함하지 않는다.

(5) “국가간 통상”이라는 용어는 여러 주 사이에, 또는 여하한 외국과 여하한 주 사이 및 여하한 주 및 해외의 여하한 장소나 선박 사이에서 일어나는, 주 안에서 사용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 통상, 수송 또는 통신을 뜻한다—

(A) 전화 또는 기타 국가간 통신 수단, 또는

(B) 기타 국가간 중계.

§ 78ff. 처벌

(a) 의도적인 위반; 허위 및 오해가 가능한 진술서

본 장(본 편의 제 78dd-1 조를 제외)의 여하한 조항, 또는 여하한 규칙이나 규정 위반은 본 장에 의해 법 조항의 준수를 위반하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자, 또는 본 장, 또는 본 편의 제 78o 조 하부 조 (d)에 있는 등록 보고서에 있는대로 여하한 규칙이나 규정을 어기는 것이며 또는 여하한 보증, 또는 회원 신청이나 그에 따른 참가와 관련하여 또는 회원 한 명과 연결되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하한 자율 기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여하한 애플리케이션, 기록 또는 문서에 있는 여하한 보고서의 여하한 주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착오가 나도록 하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 시 최고 오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최고 20년 형, 또는 이 둘 다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예외는 그러한 자가 자연인이 아닐 경우, 벌금형은 최고 이천 오백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법자가 그러한 규칙이나 규정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여하한 본 조의 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b) 정보, 문서 또는 보고서 제출 불이행

본 편의 제 78o 조 하부 조 (d) 또는 여하한 관련 규칙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 문서 또는 보고서 제출을 불이행하는 여하한 발행자는 제출 불이행 기간 동안 매일 \$100 씩을 합산하여 미국 연방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발생 가능한 제출 불이행에 대한 벌금은 본 조의 하부 조

(a)에 따라 여하한 형사 처벌을 대신하며, 미국 재무부에 지불해야 하고 미국 연방 정부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

(c) 발행자, 중역, 이사, 주주, 직원 또는 발행자의 대리인에 의한 위반

(1) (A) 본 편의 제 30A 조 하부 조 (a) 또는 (g) [미국법 제 15 편 제 78dd-1 조] 를 위반하는 여하한 발행자는 최고 2 백만 달러까지 벌금형을 부과한다.

(B) 본 편의 제 30A 조 하부 조 (a) 또는 (g) [미국법 제 15 편 제 78dd-1 조] 를 위반하는 여하한 발행자는 위원회가 부과하는 벌금을 최고 만 달러까지 내야 하는 민사 처벌 대상이 된다.

(2) (A) 본 편의 제 30A 조 하부 조 (a) 또는 (g) [미국법 제 15 편 제 78dd-1 조] 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여하한 중역, 이사, 직원, 발행자의 대리인 또는 발행자를 대표하는 주주는 최고 십만 달러까지의 벌금형 또는 최고 5 년형, 또는 둘 다 처벌을 받는다.

(B) 본 편의 제 30A 조 하부 조 (a) 또는 (g) [미국법 제 15 편 제 78dd-1 조] 를 위반하는 여하한 중역, 이사, 직원, 발행자의 대리인 또는 발행자를 대표하는 주주는 위원회가 부과하는 최고 만 달러까지의 민사 처벌을 받는다.

(3) 제 (2) 항에 의해 여하한 중역, 이사, 직원, 발행자의 대리인 또는 발행자를 대표하는 주주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에는 언제나 그 발행자가 그 벌금을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지불해서는 안 된다.